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월 16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월 29일

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종 울

나. 제안이유

- 새 정부 국정과제 ‘치매국가책임제’의 차질 없는 이행과 ‘고령 사회 대비 및 노후생활 보장’ 대응체계 강화에 따라
- 지역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치매안심센터 신축·운영과 치매노인 가구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개선 관련 실행과제 수립·시행을 위한 한시 전담기구 신설 및 전담인력 증원을 통하여
-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과 최고 수준의 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부응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1,663명 → 1,667명(+4명)
 - 집행기관 : 1,635명 → 1,639명(+4명)
 - 의회사무기구 : 28명(변동없음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
- 정원 총계 : 1,663명 → 1,667명(+4명)
- 일반직 계 : 1,625명 → 1,629명(+4명)
 - 5급 : +1명
 - 6급 이하 : +3명

○ 한시 정원표(안 별표 4)

- 정원 총계 : 3명 → 4명(+1명)
- 일반직 계 : 3명 → 4명(+1명)
 - 5급 : +1명
- 존속기한
 - 2018년 12월 31일까지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장 근

○ 본 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‘고령사회 대비,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’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2개소에 설치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인 개소와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한시정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